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 설치〉

■ 임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725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1
IV . 검토의견	2
1.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안 별표 2)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임태영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6. 11.

다. 회 부 일 : 2025. 6.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III.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 설치(안 별표 2)

현행	개정안
○ 별표 2 <신설>	- 별표 2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

현행법 제5조¹⁾에 따라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임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임.

1)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하도급거래 공정화기금’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법률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금명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
재 원	◦ 정부의 출연금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 제25조의3에 따라 집행된 과징금에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 제25조의3: 과징금 1. 제3조제1항, 제2항(제3호 제외), 제6항, 제7항을 위반한 원사업자 2. 제3조제1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원사업자 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자 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발급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3.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 4.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발주자 5. 제14조제5항을 위반한 원사업자 6.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용 도	◦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구제를 위한 사업 ◦ 하도급거래 공정화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교육·홍보 ◦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그 밖에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구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관 리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라 함)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며,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지 못하는 등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조치들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부과·징수된 과징금은 일반회계로 귀속됨에 따라, 해당 과징금을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직접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의 구제 등을 위한 용도로 직접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하도급법에 따른 과징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을 설치하여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에 따른 피해 예방·구제를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하려는 것으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얻은 원사업자 등의 부당 이익을 환수하여 마련한 재원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동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사인 간 위법행위에 따른 손실을 일반 국민의 세금으로 배상하는 결과로 손해배상의 원칙에 위배되며,

과징금 징수액 외에 별다른 기금 수입원이 없어 일반회계 출연금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기금 재원(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 목적 사업 수행 간 긴밀한 연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금 신설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므로, 과도한 기금설치 방지,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14조²⁾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 ② 신축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 ③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 ④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사 시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임.

2)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이에 개정안이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보면 먼저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 및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동 기금의 재원 중 ‘하도급법 제25조의3에 따라 징수된 과징금에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경우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발생한 과징금을 피해를 입은 수급사용자에 대한 지원 및 하도급 거래에 따른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재원-용도 간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다만, 과징금은 부과·징수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데, 최근 5년간 과징금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실적을 살펴보면 연도마다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인 금액으로는 기금 재원으로 충분하지 않아 보이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등의 출연금 또는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에 의존할 우려가 있어 보임.

<하도급법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징수결정액	433	529	565	107	210
실제 수납실적	104	240	465	14	118

자료: 기획재정부

다음으로 ‘신축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 및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

적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영세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소송 중 발생하는 비용이나 최종선고까지 걸리는 시간적 비용 등을 부담하기 어려우며, 해당 과정에서 파산 등의 경영 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기금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파산 등의 경영 위기를 방지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만,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³⁾하고 있는데, 이를 특별하게 과징금 등을 통해 마련된 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현재 일반회계 사업으로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의 용도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 중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불공정 하도급 개선 관련 공정위 일반회계 세출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	비고
공정거래 위원회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	1,718	-하도급분야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조사 -하도급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를 위한 기술탈취·유용행위 예방 및 사건 처리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하도급대금 연동제 지원(연동지원본부 운영 → 조정원에 위탁 운영) -하도급법 제3조의3에 따른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지원 -하도급 분야 공시위탁 운영
	한국공정거래 조정원 출연	12,757	-(분쟁조정) 하도급거래 중소기업자 피해 구제* * (2024) 접수 1,105건 / 처리 1,107건 -(협약이행평가) 공정거래 협약에 대해 현장실사 등을 통해 그 이행사항 점검 * (2024) 하도급 188개사 대상 수행
중소벤처 기업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구축	17,800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불공정거래 상담·신고· 피해구제방법 안내, 전문 변호사의 무료 법률 자문 지원,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자율적조정 지원,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및 행정조치 등 -피해구제 및 사전예방,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소관인 하도급법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u><신 설></u>	별표 2 <u>7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u>

문의처
02)6788-5152